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81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송기헌・신정훈・임호선

송언석 · 이광재 · 안호영

송재호・위성곤・윤재갑

김성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혁신도시의 문화·교육·복지·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 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혁신도시발전계획의 수립·시행 주체가 해당 시·도지사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큰 문화시설에의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문화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「문 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 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·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의3제2항제3호 중 "혁신도시"를 "여가·문화·교육 프로그램 등 혁신도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행 < <u><신설></u> 제29조의3(이전공공기관의 지역	개 정 안 제16조의2(문화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 신도시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 을 위하여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・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발전에 대한 기여) ① (생략)	발전에 대한 기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	2
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	
한다.	
1. • 2. (생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<u>혁신도시</u> 주민 지원을 위한	3. <u>여가·문화·교육 프로그램</u>
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	<u>등 혁신도시</u>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
③・④ (생 략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